【별표 4】

권한의 범위 (제12조 관련)

구 분	소 속	권한 범위
국방부 체계관리자	국방부 전력정책국	·접근권한 관리 업무의 총괄 ·접근권한 부여 기준 및 절차의 수립, 관리·감독 ·합참, 각 군 본부 및 기관의 권한관리자 지정 및 관리 ·국방부 본부, 국직·합동부대의 사용자 지정 및 관리 ·권한 생성, 조정 등 권한 관련 제반 업무 수행
국방부, 합참, 각 군 및 기관의 기관관리자	국방부 전력정책국, 합참 전력기획부, 각 군 기참부, 기관(방사청, 국방연, 국과연, 기품원) 별 총괄부서	·해당 부대·기관의 조직 및 부서 관리 ·해당 부대·기관의 업무 담당부서장에 대한 권한 부여 및 현황관리 ·해당 부대·기관의 사용자 지정 및 관리 ·필요한 경우 권한의 생성, 등록, 변경 소요를 국방부에 제기
국방전산정보원		·체계의 기술적·관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 수행 ·체계 이용 내역에 대한 기록의 사후 점검 및 확인, 자료의 보관 및 주기적 백업 ·유지보수 업체(외주 용역)에 대한 관리·감독 ·체계 운영과 관련한 보안사항 조치 ·체계 이용 의견 수렴 및 운영환경 개선 ·앱가상화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
국방통합데이터센터 (DIDC)		·체계 서버, 시스템SW, 스토리지, 백업, 복구, 정보보호 등 물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 ·서버 및 기반체계 관련 침해대응 및 점검 ·서버 및 기반체계 관련 재난 관리 ·획득정보 DB의 도난·물리적 파기방지 등 자료 보안에 관한 사항